

04 제도시행 유예기한

구 분	유 예 기 한
①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 7. 18.
②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 7. 18.
③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 7. 18.

※ 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유예기한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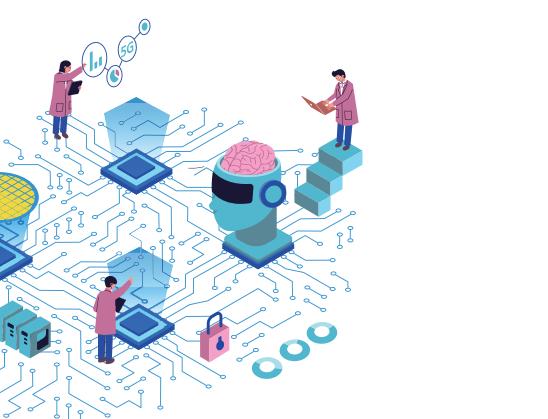
05 과태료 부과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 ·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06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구 分	대 상 설 비 (34개 공종설비)
통신설비 (8개 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방송설비 (1개 설비)	방송음향설비
정보설비 (23개 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기타설비 (2개 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01 유지보수·관리제도 개요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용어정의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

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유지보수·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02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03 관리주체 의무사항

관리주체 구비 자료 등 계획사항

구 분	항 목
구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사고재발방지 대책(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를 작성, 비치하며 세부 내용 변경 시 갱신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 신고절차

[신고인]
관리주체

신고
(선·해임, 변경)

[처리기관]
시·군·구 담당자

접수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신고 결과 통보

기안 및 결재

유지보수·관리 신고내용

구 分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변경 신고*
신고 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신고(변경)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m ²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m ² 이상 6만m ²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m ² 이상 3만m ²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m ² 이상 1만5천m ²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실시기준

구 分	교육 대상자	교육 시기	교육 시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영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	선임일 전	20시간 이상